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8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이학영·김영진·진선미

김교흥 • 진성준 • 윤호중

한정애 • 이정문 • 박홍배

전재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기존에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던 화합물·독성물질에 더하여 방사성물질·방사성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물환경의 오염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보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른 하천·호소의 방사성물 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 는 한편, 해당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물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하천·호소"를 "매년 하천·호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방법"을 "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관리·공개"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호소에 대한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여부 조사) ①		
<u>하천·호소</u> 등에 대하여 「원	<u>매년 하천·호소</u>		
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		
	<u>다.</u>		
<u>③</u> 제1항에 따른 조사 <u>절차 ·</u>	<u>④</u> <u>절</u> 차 •		
<u>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u>방법, 제3항에 따른 관리·공개</u>		
부령으로 정한다.			